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476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합1170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0,006,000원, 지방교육세 8,300,600원, 농어촌특별세 3,800,300원 합계 102,106,9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5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과세대상이 일부 특정되지 않았고,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제11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5

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취득세 면제에 관한 조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대상으로서 '안양동 1037-2 외 15필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5

과세대상이 일부 특정되지 않은 사실, ③ 과세예고통지서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기재되어 있으나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등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과세대상, 세율 등 산출근거 등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